

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(수시)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

제	호					
신청인	성명					
	주소				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			
	전자우편 주소					
면허종류						
면허번호						
면허발급일		적성검사기간	~			
연기일자						
연기사유	해외체류	질병	구속	군복무	재해	기타

위 사람은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 제16조의5에 따라 해당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가 연기되며, 소지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중에 기재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유효함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유의사항

- (주) 1. 이 확인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과 함께 소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.
2.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(수시)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